세무와회계저널 : 제1권 2호(2000년 11월).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ol.1, No.2(November 2000).
pp.161~185.

이연법인세 도입과 재무구조의 변화

이 병 철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 순 회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 갑 성 · 경영학박사, 세무사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본기업은 1995년부터 1998년도까지의 4개 회계연도의 12월말 결산법인 77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무제표 자료를 이연법인세 도입을 가정하여 수정한 후 수정전과 후의 재무구조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이연법인세 도입에 따른 경영자의 대응 의도를 배제한 채 이연법인세 제도 도입 자체에 의한 재무구조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연법인세 제도 도입을 가정하였을 경우 총자산부채비율과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의 경우 총자산 고정부채비율만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의 경우 총자산부채비유율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자기자본부채비율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하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표기)은 총자산부채비율과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부회계감사제외법인(이하 "외부감사 제외법인"으로 표기)의 경우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자본부채비율은 호전되었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4등분하여 실시한 분석 결과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총자산부채비율, 총자산고정부채비율 그리고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이 나빠지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총자산부채비율과 자기자본부채비율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회계, 세효과회계, 재무구조, 부채비율

Ⅰ. 서론

기간비용으로서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적절히 대응시켜 법인세차감후순이익을 보고하지 않으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의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법인세비용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 산정기준에 의한 법인세납부액은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계산하지만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는 세법에 의하여 익금, 손금 등을 조정한 후의 것이 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간에 이연법인세에 따른 조정액 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회계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당기순이익,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에 표시하는 것을 이연법인세회계(Deferred Tax Accounting) 또는 세효과회계(Tax Effect Accounting)라 한다.[1)]

이연법인세회계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변동과 이연법인세차(자산)·대(부채)의 측정관계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연법인세대·차의 계상은 기업규모, 재무구조 등에 따른 기업의 특성변수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으며, 산업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Behn, Eaton and Williams, 1998). 이러한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대리인이론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연법인세회계제도는 당기순이익과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Espahbodi and Espahbodi, 1995).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연법인세회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손익계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연법인세회계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시점에서 이연법인세가 기업의 재무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과세와 재무구조의 관계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거리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세율 또는 과세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변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연법인세회계제도 도입이라는 외부적인 충격을 대리인 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해보

---

1) 일본에서는 이연법인세회계를 주로 세효과회계라고 한다(彌永眞生·足田浩, 1997)

면, 기업은 이연법인세차·대의 발생으로 자산과 부채의 절대액이 변하게 되므로 경영자는 새로운 재무구조의 균형상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자의 의도는 제도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경영자의 의도를 배제한 채 이연법인세 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구조의 변화를 확인하려면 이연법인세 도입전의 재무제표로 도입을 가상한 수정재무제표를 만들어 도입전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되기 전의 대차대조표를 이연법인세차·대가 계상된 대차대조표로 재구성하여 재무구조의 변화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이연법인세회계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에서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월결손금 등을 계산한 후 차기 확정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의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서는 과세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연법인세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제 3 장에서 표본을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변수를 정의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이연법인세 제도의 도입은 표본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전체표본, 외부감사 대상법인 대 외부감사 제외법인, 기업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의 설정

2.1 과세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Miller(1977)는 기업에 대한 과세와 재무구조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법인세가 기업의 재무구조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연구해 왔다. 기업에 대한 과세와 재무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약간 상반된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Billings(1994)는 1986년 과세에 의한 세율변동이 재무구조 결

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의 연구는 천연자원산업 한 개에 제한된 것으로 기업의 이익 수준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Titman and Wessels (1988) 과 Gaver and Gaver(1993) 등은 부채수준과 세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부채와 세율간의 관계를 긍정하고 있다. MacKie and Mason(1990), Givoly et.al.(1992), Rajan and Zingales(1995)과 Graham (1996)은 부채증가액과 세율사이에 정(+)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Graham, Lemmon and Schallheim(1998)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재무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에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었다. Guenther(1994)는 미국정부의 세율인하 조치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장기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차기로 이연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율인하를 위한 1986년 조세개혁에 대하여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순이익을 높게 보고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 Espahbodi and Espahbodi(1995)는 이연법인세부채(대)와 부채규모를 각각 총자산으로 표준화한 다음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들 두 변수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Espahbodi and Espahbodi(1995)는 이연법인세에 관한 회계기준이 발표되었을 때 주식시장에서의 비정상수익률은 이연법인세와 정(+)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이연법인세 제도에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계약비용과 정치적 비용 등 대리인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연법인세는 부채를 줄이고 투자자 지분을 늘려 줌으로써 부채계약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연법인세 도입으로 도산 위험이 줄어들게 되므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게 되고 비정상주가수익률과 부채비율은 정(+)의 관계에 있게 된다.

2.2 이연법인세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의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규범적 입장에서 이연법인세의 도입 타당성을 주장한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이연법인세 도입 필요성 주장 논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연법인세 회계제도는 수익 비용대응원칙을 법인세에도 적용하여 적정기간 손익을 계산함으로써 회계의 기본목적인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기간손익계산을 적정히 함으로써 배당이익율과 수익성비율 및 주식시장가치비율 등을 공정하게 계산할 수 있다(이광조, 1986).

(2) 이연법인세 회계의 도입이 가져오는 정보의 유용성이 크므로 이연법인세 회계도입에 따른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유석규, 1990).

(3) 수익비용의 대응에 의한 법인세비용의 기간배분이 되므로 법인세 등이 당기순이익 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줄어들게 되고 올바른 경영성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권봉상, 1993; 김광윤과 곽병기, 1998).

이들의 연구는 이연법인세제도 도입이 손익계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연법인세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연구들은 이연법인세가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7년 이연법인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 SFAS No. 109에 의하면 이연법인세차(deferred tax assets)를 계상하는 기업은 차기 이후 결산기에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이 50%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의 실질자산가치를 표기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차에 대하여 평가성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Behn, Eaton and Williams(1998)는 기업의 전년도 소득 및 당기의 재무상태와 이연법인세차평가충당금의 설정액과는 부(-)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전년도의 소득이 높거나,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충당금을 적게 설정하였다. 반면에 Miller and Skinner(1998)는 이연법인세차가 많은 기업들이 평가충당금을 많이 설정하고 미래의 기대과세소득이 많은 기업들은 평가충당금을 적게 계상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은 이연법인세차 계상에 따른 평가충당금 설정 과정에 경영자의 의도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연법인세차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계상토록 하고 있고 이미 계상한 이연법인세차에 대하여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연법인세차에 대하여 평가충당금을 계상할 여지가 없다.

2.3 가설의 설정

이연법인세차는 세무회계상의 익금으로 당해연도에 법인세로 유출은 있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선급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자산을 의미하고, 이연법인세대는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당해년도의 법인세부담 세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기업회계상으로는 미지급비용 즉, 부채로 처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느냐, 이연법인세차를 계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변화하게 된다.

기업의 특성변수로서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차입약정사항위배(violation of the debt covenants)로 도산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부도방지비용(costs of technical default)이 높게 마련이다. 또한 이들 기업은 새로운 자금원으로 부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영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산, 부채, 자본 구성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은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등과 같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경영자의 의도가 배제된 순수한 이연법인세의 재무구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 이연법인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는 호전된다.

III. 표본의 수집과 모형의 설정

3.1. 표본의 수집

우리 나라의 이연법인세회계제도는 1996년 3월 30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의하여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연법인세회계제도를 적용한 재무제표는 1999년 12월말 결산법인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회계제도 실시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자료에서 이연법인세회계제도를 적용하여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두 재무제표간의 재무구조 변동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4개 회계연도의 12월말 결산 비상장법인 중에서 298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57개 업체는 검증대상기간인 4개 회계연도의 자료가 입수되지 못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1개 업체를 선정되었다. 표본기업에 대한 회계자료는 서울소재 세무사사무실(세무법인 포함)의 세무사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 세무회계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세신고를 위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표본자료의 수집과정에서 상호교차검증(cross-footed test)을 통하여 자료수집과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검증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다. 검증분석의 개시 회계연도를 1995년으로 한 것은 회계자료의 의무보존연한이 5년이어서 그 이전자료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표본으로 선정된 241개 업체에 대한 4개 회계연도의 표본 수가 모두 964개로 되었으나, 차감할 일시적차이, 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액 등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한 결과 이연법인세가 없는 기업이 총 194개로 이중 외부감사대상법인이 7개이고, 외부감사제외법인이 187개 이었다. 이들 표본기업을 제외하여 최종표본수는 770개가 되었다.

표본의 구성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조업이 394개로 전제표본의 51%를 차지하고, 비제조업은 376개로 전체표본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표본기업의 업종별 구성내용

구 분	제조업	비제조업							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소계	
외부감사 대상법인	143 (18.57)	23 (2.99)	20 (2.60)	12 (1.56)	8 (1.04)	10 (1.30)	28 (3.64)	101 (13.11)	244 (31.69)
감사 제외법인	251 (32.60)	44 (5.71)	132 (17.14)	6 (0.78)	11 (1.43)	8 (1.04)	74 (9.61)	275 (35.71)	526 (68.31)
계	394 (51.17)	67 (8.70)	152 (19.74)	18 (2.34)	19 (2.47)	18 (2.34)	102 (13.25)	376 (48.82)	770 (100.00)

주) ( )내는 구성비(%) 임.

3.2. 표본기업의 특성

표본기업의 특성변수에 관한 기술적인 통계분석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총자산(ASSET)의 평균은 43,641백만원이며 유동자산(CURASS)의 평균은 24,221백만원이고 고정자산(FIXASS)의 평균이 12,567백만원으로 유동자산이 고정자산에 비하여 2배 가량 된다. 총부채(LIAB)의 평균은 28,319백만원으로 총자산의 65%정도로 비교적 건실한 편에 속한다.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등에 대한 표준편차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에 자본(TOTCAP)은 평균 15,321백만원이고 표준편차가 102,833백만원으로 다른 변수에 비하여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낮다.

표본기업의 분포상황을 보기 위하여 왜도(skewness)[2]와 첨도(kurtosis)[3]를 분석하였다. 첨도와 왜도의 분석을 통하여 본 표본의 기업규모는 〈표 2〉에서 왜도가 14.90, 첨도가 2582.22로 비교적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으로 중앙의 최빈수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표본이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규모기업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일반적인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표본기업의 특성변수에 관한 기술적 통계자료

변 수 명	평 균	표준편차	왜 도	첨 도
유동자산(CURASS)	24,221	225,613	17.23	323.38

2) 왜도는 분포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얼마나 치우쳤는가를 측정하는 통계치로서 중위수(median)와 최빈수(mode)가 평균값(mean)보다 오른쪽에 나타날 경우 왜도는 음(-)의 값을 가지고, 왼쪽으로 치우칠 경우 양(+)의 값을 가진다. 왜도의 계산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어슨이 제시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왜도} = 3(\text{평균값}-\text{중위수})/\text{표준편차}$$

3) 첨도는 양쪽으로 늘어진 꼬리가 얼마나 되고 상대적으로 최빈수(mode)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치이다. 일반적으로 대칭형, 종형 분포의 경우 첨도는 0의 값을 가지며, 양쪽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고 중앙의 최빈도에 집중되어 있을수록(즉, 산이 높을수록) 양(+)의 값을 가지며, 꼬리가 짧고 산이 납작할수록 음(-)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첨도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첨도} = [\Sigma(X-\bar{X})4/(n-1)]/s4-3$$

변 수 명	평 균	표준편차	왜 도	첨 도
고정자산(FIXASS)	12,567	60,506	8.44	78.02
총자산(ASSET)	43,641	314,138	14.90	2,582.22
유동부채(CURLIB)	18,331	157,871	18.13	361.77
고정부채(FIXLIB)	9,985	80,818	15.25	243.53
총부채(LIAB)	28,319	236,020	16.87	306.40
자본(TOTCAP)	15,321	102,833	9.71	100.27

주) 평균 및 표준편차의 단위는 백만원임.

LIAB와 TOTCAP은 기업의 규모(ASSET)에 비하여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첨도에 있어서 ASSET의 값이 2,582.22인데 비하여 LIAB와 TOTCASP의 값은 각각 306.40, 100.27이다.

3.3 모형의 설정과 변수의 정의

이연법인세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재무상태를 비교하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 도입 전을 집단 1로 하고, 도입 후를 집단 2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집단 1의 재무자료는 표본기업의 재무자료에 의거하여 수집하고 집단 2는 이연법인세 도입을 가정하여 수정된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집단 1 : 이연법인세 도입 전의 재무상태에서 다음의 내용을 측정하였다.

FC1 = LIAB/ASSET
FC2 = FIXLIB/ASSET
FC3 = LIAB/TOTCAP
FC4 = FIXLIAB/TOTCAP
여기서, LIAB = 총부채 ASSET = 총자산
FIXLIB = 고정부채 TOTCAP = 자기자본

즉, 이연법인세 도입 전의 재무상태에 관한 것으로서 FC1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부채비율이며 FC2는 고정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다. 이연법인세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표기는 비유동항목으로 분류되어 이연법인세차는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표기하고 이연법인세대는 고정부채로 표기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의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FC3은 총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부채비율이며 FC4는 고정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이다.

집단 2 : 이연법인세 도입 후의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연법인세 상계잔액(DEFTAX)을 산출하였다.

$$DEFTAX = DRDTAX-CRDTAX$$

DEFTAX는 이연법인세차(DRDTAX)에서 이연법인세대(CRDTAX)를 차감한 잔액이다. 여기서 DEFTAX가 정(+)이면 이연법인세차가 되고 부(-)이면 이연법인세대가 계상된다. 따라서 DEFTAX가 정(+) 또는 부(-)에 따라서 총부채, 총자산 등의 산출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연법인세차인 경우

DEFTAX>0이면, 이연법인세차로서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RC1 = LIAB/(ASSET+DEFTAX)

RC2 = FIXLIB/(ASSET+DEFTAX)

RC3 = LIAB/(TOTCAP+DEFTAX)

RC4 = FIXLIAB/(TOTCAP+DEFTAX)

여기서 RC1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계산식이며 이연법인세차이기 때문에 총자산에 DEFTAX를 가산한 것이다. RC2의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계산식에도 총자산에 DEFTAX를 가산한다. RC3에서 자기자본부채비율의 계산에서 자기자본에 DEFTAX를 가산하는 것은 이연법인세차가 계산되면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R4의 자기자본고정부채비

율에서도 자기자본에 DEFTAX를 가산한 것도 이연법인세차는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이연법인세대

DEFTAX<0이면, 이연법인세대로서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RC1 = (LIAB+DEFTAX)/ASSET

RC2 = (FIXLIB+DEFTAX)/ASSET

RC3 = (LIAB+DEFTAX)/(TOTCAP-DEFTAX)

RC4 = (FIXLIAB+DEFTAX)/(TOTCAP-DEFTAX)

여기서 DEFTAX가 부(-)이면 이연법인세대이고 고정부채로 계상된다. RC1은 총자산부채비율로서 이연법인세대는 부채항목이기에 총부채에 DEFTAX를 가산한 총부채로 총자산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RC2도 고정부채에 DEFTAX를 가산하여 총자산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이연법인세대는 고정부채이면서 손익계산에서 법인세비용에 가산되어 당기법인세비용차감후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RC3의 계산에서 자기자본에 DEFTAX를 차감하여 자기자본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RC4도 DEFTAX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연법인세제도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재무상태에 대한 각각의 부채관계비율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그 차이를 산출하였다. 이 차이는 결국 경영자의 의도에 의한 변화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이연법인세 도입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부분이 된다.

DIF1 = FC1 - RC1

DIF2 = FC2 - RC2

DIF3 = FC3 - RC3

DIF4 = FC4 - RC4

여기서 DIF1은 이연법인세 도입 전의 총자산부채비율에서 도입 후의 총자산부채비율을 차감하여 비율의 변경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다. DIF2는 이연법인세 도입 전의 총자산고정부채비율과 도입 후의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의 변동분이다. DIF3은 이연법인세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자기자본부채비율의 변화를 보며, DIF4는 이연법인세 도입 전과 후의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3.4 변수의 정의

이연법인세차·대의 상계 잔액을 DEFTAX라 하여 이연법인세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연법인세계산에서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익금가산유보액(ATOTAL)과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으로 차기 이후 회계연도에 과세표준(TAXBASE)을 차감시킬 수 있는 이월결손금(EXLOS)을 합산하면 차감할 일시적차이 금액(MTOTAL)이 된다.

$$MTOTAL = ATOTAL + EXLOS$$

MTOTAL에서 법인세율과 소득할 주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 이연법인세차(DRDTAX)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구법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하였다)의 최저한세제도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차기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되는 이월세액공제액(EXTAXLE)도 이연법인세차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손금가산유보액(BTOTAL)에 법인세율과 주민세율을 적용하면 이연법인세대(CRDTAX)가 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가산할 일시적차이(BTOTAL)를 차감한 잔액을 RTOTAL이라고 하면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 절차에 따라 계산된다.

우리 나라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 구조는 과세표준액이 1억원 미만은 16%이고, 1억원을 초과하면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과세 체계이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연법인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인소득할 주민세는 법인세부담액의 10%를 납부하게 되어 이연법인세 계상에서 최대 부담세액은 30.8%가 되므로 이것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1) 만약에 TAXBASE 〉 1억원이면,

DEFTAX=(RTOTAL*0.308) + EXTAXLE

여기서 RTOTAL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차감한 잔액이며 EXTAXLE는 이월세액공제액이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세무조정한 익금가산유보액과 이월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세무조정한 손금가산유보액이다.

EXTAXLE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최소한 소득의 12%(중소기업의 경우는 10%)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감면세액이 당기에 전액 공제되지 못하고 차기 이후의 법인세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이월세액공제액이다.

(2) 만약에 TAXBASE ≦ 1억원이고, (TAXBASE+RTOTAL) 〉 1억원이면,

DEFTAX = 【{{(TAXBASE+RTOTAL)-100,000,000}*0.308
+ (100,000,000*0.176)} - TAXBASE*0.176】 + EXTAXLE

여기서 TAXBASE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소득금액인 과세표준이며, RTOTAL은 세무조정한 익금가산유보액과 이월결손금을 합한 차감할 일시적차이금액에서 세무조정한 손금가산유보액인 가산할 일시적차이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3) 그러나 만약에 TAXBASE≦1억원이고, (TAXBASE+RTOTAL)≦1억원이면,

DEFTAX = {(TAXBASE+RTOTAL)*0.176-TAXBASE*0.176}+EXTAXLE

여기서, TAXBASE = 과세표준액
RTOTAL = 차감할 일시적차이 - 가산할 일시적차이
EXTAXLE = 이월세액공제액

IV. 실증분석과 해석

이연법인세회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회계상으로 측정되는 재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회계연도의 자료로 이연법인세 도입 전과 도입 후의 부채관계비율을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 도입 후의 부채관계비율의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는 총자산에, 이연법인세대는 자본에서 차감하고 총부채에 각각 가산하여 산출하였

다. 이들 두 개의 집단을 상호 비교하여 과연 재무구조에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연법인세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개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회계제도 도입 전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쌍대비교에 의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4.1. 전체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전체표본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 도입전·후의 재무구조 변화는 〈표 3〉과 같다. DIF1과 DIF2는 이연법인세 도입 전후의 총자산부채비율, DIF3와 DIF4는 이연법인세의 도입 전후의 자기자본부채비율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DIF1과 DIF3은 부채비율의 계산에 총부채를 사용한 것이고 DIF2과 DIF4는 고정부채만을 사용한 경우이다. 이연법인세 도입후의 부채비율 계상은 이연법인세(DEFTAX)가 0보다 크면 이연법인세차가 되므로 이연법인세액은 총자산과 자본에 각각 추가되고, DEFTAX가 0보다 작으면 이연법인세대가 되어 이연법인세액은 총부채에 추가되고 자본에서 차감된다.

DIF1의 경우는 이연법인세의 도입 전후의 부채비율차이 평균이 -0.001이고 표준편차는 0.012로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값의 부호가 음(-)이므로 이연법인세 도입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짐을 알 수 있다.

한편 DIF2는 총자산 대비 고정부채의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연법인세회계제도는 이연법인세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고정부채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연법인세 도입후의 고정부채비율 계상은 DEFTAX가 0보다 크면 이연법인세차로서 FIXLIB/ (ASSET+DEFTAX)가 된다. 반대로 DEFTAX가 0보다 작으면 이연법인세대로서 (FIXLIB+DEFTAX)/ASSET이 된다. 〈표 3〉에서 DIF2의 고정부채비율의 차이는 평균이 -0.003이며 표준편차는 0.010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것은 이연법인세의 도입후에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DIF3은 이연법인세의 도입 전의 자기자본부채비율에서 도입 후의 자기자본부채비율을 차감한 것이다. 이연법인세 도입 후의 자기자본부채비율을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 DEFTA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차로서 LIAB/(TOTCAP+DEFTAX)이고,

DEFTA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로서 (LIAB + DEFTAX)/(TOTCAP - DEFTAX)이다. 〈표 3〉에서 DIF3의 평균값은 상재적으로 다른 차이값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표준편차 또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확율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이연법인세 도입과 기업의 재무구조 변화 (전체표본)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DIF1	-0.001	0.012	-1.753 *
DIF2	-0.003	0.010	-6.642 ***
DIF3	0.060	1.496	1.030
DIF4	-0.005	0.317	-0.441

주1) DEFTAX가 0보다 큰 경우
DIF1 = (LIAB/ASSET) - {LIAB/(ASSET+DEFTAX)}
DIF2 = (FIXLIB/ASSET) -{FIXLIB/(ASSET+DEFTAX)}
DIF3 = (LIAB/TOTCAP) -{(LIAB/(TOTCAP+DEFTAX)}
DIF4 = (FIXLIB/TOTCAP) -{FIXLIB/(TOTCAP+DEFTAX)}

주2) DEFTAX가 0보다 작은 경우
DIF1 = (LIAB/ASSET) - {(LIAB+DEFTAX)/ASSET}
DIF2 = (FIXLIB/ASSET) -{(FIXLIB+DEFTAX)/ASSET}
DIF3 = (LIAB/TOTCAP) -{(LIAB+DEFTAX)/(TOTCAP-DEFTAX)}
DIF4 = (FIXLIB/TOTCAP) -{(FIXLIB+DEFTAX)/(TOTCAP-DEFTAX)}

주3) LIAB : 총부채 ASSET : 총자산
FIXLIB : 고정부채 TOTCAP: 자기자본
DEFTAX = DRDTAX - CRDTAX, DRDTAX = 이연법인세차,
CRDTAX = 이연법인세대

주4) ***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DIF4는 이연법인세의 도입전의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에서 도입 후의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을 차감한 것이다. 이연법인세 도입 후의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의 계산식은 먼저 DEFTAX가 0보다 클 경우의 계산식은 역시 이연법인세차로서 FIXLAB/(TOTCAP + DEFTAX)가 되며, DEFTA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로서 (FIXLAB+

DEFTAX)/(TOTCAP-DEFTAX)가 된다. DIF4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는 역시 평균값에 비하여 표준편차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에서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는 호전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전체표본기업의 총자산부채비율과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높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4.2.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교분석

〈표 4〉는 이연법인세 도입 전·후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 변화에 관한 영향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이다. 제조업의 경우 DIF1과 DIF2는 모두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DIF1의 경우는 이연법인세의 도입 전후의 부채비율차이 평균이 -0.002이고 표준편차는 0.011이다. 즉, 이연법인세의 도입후에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회계상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IF2의 고정부채비율도 DIF1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DIF3의 경우는 t값이 2.237로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DIF3의 평균값은 0.126으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DIF4는 이연법인세 도입 전후에 자기자본부채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결과는 두 집단간의 표준편차가 0.283으로 평균값 0.012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비제조업의 경우에 DIF1, DIF3, DIF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는 역시 평균값에 비하여 표준편차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DIF2는 고정부채비율의 평균이 -0.002이고 표준편차는 0.001로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이연법인세가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4) 이들 결과가 경제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가정 하에 연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IMF기간에 유의하면서 분석하였으나 별도로 보고할 만한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표 4〉 이연법인세 도입과 기업의 재무구조 변화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 분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제 조 업	DIF1	-0.002	0.011	-3.771 ***
	DIF2	-0.003	0.001	-6.515 ***
	DIF3	0.126	1.056	2.237 **
	DIF4	0.012	0.283	0.796
비제조업	DIF1	0.001	0.014	0.678
	DIF2	-0.002	0.011	-3.208 ***
	DIF3	-0.055	1.916	-0.506
	DIF4	-0.061	0.566	-1.894 *

주1) DEFTAX가 0보다 큰 경우
DIF1 = (LIAB/ASSET) - {LIAB/(ASSET+DEFTAX)}
DIF2 = (FIXLIB/ASSET) -{FIXLIB/(ASSET+DEFTAX)}
DIF3 = (LIAB/TOTCAP) -{(LIAB/(TOTCAP+DEFTAX)}
DIF4 = (FIXLIB/TOTCAP) -{FIXLIB/(TOTCAP+DEFTAX)}

주2) DEFTAX가 0보다 작은 경우
DIF1 = (LIAB/ASSET) - {(LIAB+DEFTAX)/ASSET}
DIF2 = (FIXLIB/ASSET) -{(FIXLIB+DEFTAX)/ASSET}
DIF3 = (LIAB/TOTCAP) -{(LIAB+DEFTAX)/(TOTCAP-DEFTAX)}
DIF4 = (FIXLIB/TOTCAP) -{(FIXLIB+DEFTAX)/(TOTCAP-DEFTAX)}

주3) LIAB : 총부채 ASSET : 총자산
FIXLIB : 고정부채 TOTCAP: 자기자본
DEFTAX = DRDTAX - CRDTAX, DRDTAX = 이연법인세차,
CRDTAX = 이연법인세대

주4) ***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3. 외부감사 대상법인과 외부감사 제외법인의 비교분석

〈표 5〉는 재무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외부감사 대상법인과 외부감사 제외법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경우 DIF1과 DIF2의 평균 값은 각각 -0.004, -0.005이고 t값이 각각 -4.161, -6.154로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유의하다. 또한 이연법인세의 도입 전후의 부채비율과 고정부채비율 차이 평균값이 각각 -0.004, -0.005로서 부호가 부(-)로 나타났으므로 이연법인세회계제도 도입 이후 재무구조가 나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이연법인세 도입과 기업의 재무구조 변화(외부감사 대상법인과 외부감사제외법인)

구 분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외부감사 대상법인	DIF1	-0.004	0.013	-4.161 ***
	DIF2	-0.005	0.011	-6.154 ***
	DIF3	-0.121	2.502	-0.699
	DIF4	-0.101	0.690	-2.119 **
감사제외 법인	DIF1	0.0004	0.011	0.828
	DIF2	-0.002	0.009	-3.783 ***
	DIF3	0.115	0.713	3.447 ***
	DIF4	0.014	0.248	1.208

주1) DEFTAX가 0보다 큰 경우
DIF1 = (LIAB/ASSET) - {LIAB/(ASSET+DEFTAX)}
DIF2 = (FIXLIB/ASSET) -{FIXLIB/(ASSET+DEFTAX)}
DIF3 = (LIAB/TOTCAP) -{(LIAB/(TOTCAP+DEFTAX)}
DIF4 = (FIXLIB/TOTCAP) -{FIXLIB/(TOTCAP+DEFTAX)}

주2) DEFTAX가 0보다 작은 경우
DIF1 = (LIAB/ASSET) - {(LIAB+DEFTAX)/ASSET}
DIF2 = (FIXLIB/ASSET) -{(FIXLIB+DEFTAX)/ASSET}
DIF3 = (LIAB/TOTCAP) -{(LIAB+DEFTAX)/(TOTCAP-DEFTAX)}
DIF4 = (FIXLIB/TOTCAP) -{(FIXLIB+DEFTAX)/(TOTCAP-DEFTAX)}

주3) LIAB : 총부채 ASSET : 총자산
FIXLIB : 고정부채 TOTCAP: 자기자본

DEFTAX = DRDTAX-CRDTAX, DRDTAX=이연법인세차 , CRDTAX=이연법인세대

주4) ***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한 분석에서 자기자본을 분모로 한 DIF3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부호는 DIF1,2,4와 마찬가지로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DIF4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0.101로 통계적으로 0.05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자기자본대비 고정부채비율이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 이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제외법인의 경우 DIF1은 평균값이 0에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DIF2는 이연법인세 도입 전후의 고정부채비율 차이 평균이 -0.002이고 표준편차는 0.009이며 t값이 -3.783으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외부감사제외법인도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될 경우에 고정부채비율로 본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DIF3의 경우에 자기자본부채비율의 차이 평균은 0.115이고 표준편차는 0.713으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기자본부채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DIF4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외부감사제외법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될 경우 총자산 대비 고정부채비율은 악화되지만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 비율은 호전된다는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외부감사 대상법인과 외부감사제외법인의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 높아져서 결국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외부감사 대상법인과 외부감사제외법인에서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분석된 결과와 같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4.4. 기업규모에 따른 분석

〈표 6〉은 이연법인세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25%로 나누어 4등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이연법인세효과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업의 규모(SIZE)는 총자산(ASSET)을 기준으로 하여 25% 미만의 기업군을 SIZE1, 25%이상 50%미만 기업군을 SIZE2, 50%이상 75%미만 기업군을 SIZE3, 75%이상 기업군을 SIZE4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모에 관계없이 DIF1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F1은 이연법인세 도입 전의 부채비율(LIAB/ASSET)에서 도입 후의 부채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이연법인세 도입 후의 부채비율 계상은 이연법인세(DEFTAX)가 0보다 크면 이연법인세 차로서 LIAB/(ASSET+DEFTAX)가 되고, DEFTAX가 0보다 작으면 이연법인세대로서 (LIAB+DEFTAX)/ASSET}이 된다.

〈표 6〉 이연법인세 도입과 기업의 재무구조 변화 (기업의 규모별)

구 분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SIZE 1	DIF1	0.004	0.009	4.989 ***
	DIF2	0.0001	0.003	0.465
	DIF3	0.082	0.853	1.132
	DIF4	-0.046	0.700	-0.776
SIZE 2	DIF1	0.001	0.008	2.189 **
	DIF2	-0.001	0.005	-1.216
	DIF3	0.230	0.851	3.555 ***
	DIF4	0.044	0.312	1.873 *
SIZE 3	DIF1	-0.002	0.012	-2.260 **
	DIF2	-0.003	0.012	-3.227 ***
	DIF3	0.035	0.670	0.688
	DIF4	-0.010	0.077	-1.735 *
SIZE 4	DIF1	-0.005	0.015	-4.709 ***
	DIF2	-0.007	0.014	-6.651 ***
	DIF3	-0.169	2.632	-0.856
	DIF4	-0.080	0.485	-2.198 **

주1) SIZE 1 = 총자산 하위 25% 미만 그룹
SIZE 2 = 총자산 하위 25%이상 50%미만 그룹
SIZE 3 = 총자산 하위 50%이상 75%미만 그룹
SIZE 4 = 총자산 75% 이상 그룹
* 770개 표본기업을 4등분한 것임.

주2) DEFTAX가 0보다 큰 경우
DIF1 = (LIAB/ASSET) - {LIAB/(ASSET+DEFTAX)}
DIF2 = (FIXLIB/ASSET) -{FIXLIB/(ASSET+DEFTAX)}
DIF3 = (LIAB/TOTCAP) -{(LIAB/(TOTCAP+DEFTAX)}
DIF4 = (FIXLIB/TOTCAP) -{FIXLIB/(TOTCAP+DEFTAX)}

주3) DEFTAX가 0보다 작은 경우
DIF1 = (LIAB/ASSET) - {(LIAB+DEFTAX)/ASSET}
DIF2 = (FIXLIB/ASSET) -{(FIXLIB+DEFTAX)/ASSET}
DIF3 = (LIAB/TOTCAP) -{(LIAB+DEFTAX)/(TOTCAP-DEFTAX)}
DIF4 = (FIXLIB/TOTCAP) -{(FIXLIB+DEFTAX)/(TOTCAP-DEFTAX)}

주4) LIAB : 총부채 ASSET : 총자산
FIXLIB : 고정부채 TOTCAP: 자기자본
DEFTAX = DRDTAX-CRDTAX, DRDTAX = 이연법인세차, CRDTAX = 이연법인세대

SIZE1과 SIZE2의 기업은 부채비율인 DIF1의 평균이 각각 0.004, 0.001이며 각각 0.01과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SIZE1과 SIZE2의 기업은 이연법인세의 도입 전과 비교하여 이연법인세의 도입 후에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호전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SIZE3과 SIZE4의 기업은 DIF1이 -0.002, -0.005이고 각각 0.05,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부채비율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이연법인세회계의 시행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이연법인세차가 계상되어 재무구조가 호전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이연법인세대가 계상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DIF2의 고정부채비율은 t-값이 SIZE1과 SIZE2는 각각 0.465, -1.21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SIZE3과 SIZE4의 기업은 평균값이 -0.003, -0.007로서 각각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SIZE3, SIZE4 기업의 두 집단은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고정부채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DIF3의 자기자본부채비율은 SIZE2 기업에서만이 평균 값 0.230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기자본부채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기타의 다른 규모기업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인 DIF4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SIZE4의 기업집단의 t값이 -2.198로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다른 변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즉, DIF4의 평균값이 -0.080으로 이연법인세회계 도입으로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표본기업의 규모를 25%씩 나누어 이연법인세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재무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표본기업의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나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V. 결론

과세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연구들은 과세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예: Billings, 1994) 다른 연구들은 과세와 재무구조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예: Mackie and Mason, 1990). 이연법인세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된바가 없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가 도입될 경우 재무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를 알아보았다.

표본기업은 1995년부터 1998년도까지의 4개 회계연도의 12월말 결산 비상장법인 29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770개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연법인세 도입을 가정하여 수정한 후 수정전 재무제표와 재무구조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가설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연법인세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한 기업의 재무구조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자산부채비율과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 이연법인세 도입 후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총자산부채비

율,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 악화되는 반면에 자기자본부채비율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제조업의 경우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대상법인과 외부감사제외법인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총자산부채비율, 총자산고정부채비율 그리고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이 악화되었고, 외부감사제외법인의 경우 총자산고정부채비율은 악화되었으나 자기자본부채비율은 호전되었다.

기업규모를 총자산을 기준으로 4등분하여 분석한 결과 3/4, 4/4 분위에 속하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총자산부채비율과 총자산고정부채비율 그리고 자기자본고정부채비율이 모두 나빠졌으나 1/4, 2/4 분위에 속하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총자산부채비율과 자기자본부채비율이 호전되었다. 즉 작은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개선된 반면에 큰기업들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다.

이연법인세회계가 시행된다고 하여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은 변동이 없으나 이연법인세회계의 시행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서 회계처리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보수주의 원칙을 전제로 할 경우에 이연법인세회계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권봉상,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실증적 연구, 한국비교회계학회, 1993.

김광윤·곽병기, 상장기업의 이연법인세회계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12호, 1998.

유석규, 이연법인세회계시스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호, 1990.

이광조, 법인세기간배분회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 논문, 1986.

Behn, B. K., T. V. Eaton and J. R. Williams, "The Determinants of Deferred Tax Allowance Account Under SFAS No. 109," Accounting Horizons, Vol. 12, No. 1, March 1998.

Billings, B. A. "Economic Impact of Taxes on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Resources Industry,"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22, No. 4, October 1994.

Espahbodi, H. and H. Espahbodi, "Equity Price Reaction to the Pronouncements Related to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Vol. 70, No. 4, October 1995.

Gaver, J. and K. Gaver, "Additional Evid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vestment Opportunity Set and Corporate Financing, Dividend and Compensation Polic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6, 1993.

Givoly, D., C. Hahn, A. Ofer, and O. Sarig, "Tax and Capital Structure Evidence from Firms` Response to The Tax Reform Act of 1986,"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5, 1992.

Graham, J., "Debt and the Marginal Tax Rat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41, 1996.

Graham, J. R., M. L. Lemmon and J. S. Schallheim, "Debt, Leases, and the Endogeneity of Corporate Tax Status," The Journal of Finance, LIII, No. 1, February 1998.

Guenther, D. A.,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The Accounting Review, Vol. 69, January 1994.

Mackie and J. Mason, "Do Taxes Affect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Journal of Finance, Vol. 45, 1990.

Miller, G. S., and D. J. Skinner, "Determinants of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Under SFAS No. 109," The Accounting Review, Vol. 73, No. 2, April 1998.

Miller, M. H., "Debt and Taxes," Journal of Finance, May 1977.

Rajan, R. G. and L. Zingales, "What Do We Know About Capital Structure Choice? Some Evidence From International Data," Journal of Finance, Vol. 50, 1995.

Titman, S. and R. Wessels,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Choice," Journal of Finance, Vol. 43, 1988.

彌永眞生・足田浩, 稅効果會計, 中央經濟社, 1997.

Deferred Tax and Transfiguration of Capital Structure

Byung-Chul Lee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Soon-Hee Yeon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Kap-Sung Hwang · Cretified Tax Accountant, Ph.D.

Deferred tax accounting has been practiced for a long time in USA and research have concentrated on valuation of deferred tax asset and deferred tax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Kore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irms must apply deferred tax accounting from the fiscal year starting April, 1, 1998. However, up to now, research only have attempted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deferred tax accounting descriptively.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deferred tax on corporate capital structure and how differevt the effect is by the firm's characteristics.

Unlisted sample firms and data are collected from 1995 to 1998 through certified tax accountant offices in Seoul. Since the years examined are not the period applied deferred tax accounting yet, this study estimates deferred tax amount using the same method suggested by the corporat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fter eliminating samples without deferred tax estimated, 770 unlisted firms are finally used.

Four debt ratios such as total debt over total asset(TDTA), fixed debt over total asset(FDTA), total debt over capital(TDC), fixed debt over capital(FDC) are applied to evaluate the transfiguration induced by deferred tax accounting. Total sample firms show that deferred tax accounting increases TDTA and FDTA. For manufacturing firms, TDTA and FDTA increase, meanwhile TDC decreases. For non-manufacturing firms, only FDTA increases. For independent audit required firms, TDTA, FDTA, and FDC increase. Meanwhile for independent audit free firms, FDTA increases, however, TDC decreases.

Firm size is divided by four subgroups based upon total asset. Large firms' TDTA, FDTA, and FDC increased. However, Small firms' TDTA, TDC decreased. This means large firms' debt ratios are deteriorated but small firms' debt ratios are improved by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Key Word〉 Income taxes, Deferred tax, Debt Ratio, Capital structure, Firm size